

라카이 샌드파인 시설이용약관

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(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 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. 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약관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기 체결한 입회계약에 의거 라카이 샌드파인 휴양콘도미니엄(이하 “콘도”라 한다)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이용가능일수)

- 매년도 이용 가능 기간은 3월 1일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회원권의 이용 기간별 이용일 수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이용 일 수			기 간
	1실 12구좌	1실 10구좌	1실 5구좌	
여름성수기	4일	5일	10일	7월 3주 ~ 8월 4주
겨울성수기	4일	4일	8일	12월 3주 ~ 1월 4주(매 주말)
주 말	10일	11일	22일	금·토요일, 법정공휴일, 연휴전일
평 일	12일	16일	32일	상기 기간을 제외한 평일
계	30일	36일	72일	-

단, 성수기 이용 가능일 수 중 미 이용일 수는 주말 및 평일 이용 가능일 수에, 주말 미 이용일 수는 평일 이용 가능일 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- “갑”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이용 가능일 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이용 시에는 “을”이 정하는 별도의 추가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제3조(회원카드)

-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.
- 회원카드의 1일 이용권리는 당해 규격콘도 1실의 1박 권리이다.
- 회원카드를 대여받은 자가 콘도를 이용할 때는 “을”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여받은 자가 이용하는 콘도이용일수는 “갑”의 연간 이용 가능일 수에 포함한다.
-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유선으로 분실신고를 한 후 서면에 의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분실 신고 이전에 발생한 문제는 “갑”의 책임으로 한다.
- 회원카드 재발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재발급 절차에 의한다.

제4조(객실이용)

- “갑”은 “을”이 규정한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프론트에서 제시하는 숙박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은 “을”이 규정한 퇴실시간 이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“을”이 정하는 추가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이 객실 이용 시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 객실이 있으면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.

제5조(예약방법 및 절차)

- “갑”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“을”이 정하는 예약업무 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항에 의한 예약신청이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.
 - 이용실적
 - “을”이 정하는 예약업무 규정 등
- “갑”의 예약 편의를 위하여 “을”은 예약신청 및 접수방법을 정하도록 한다.

제6조(예약취소)

- 예약의 취소와 변경은 콘도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“을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“갑”이 예약 취소 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향후 예약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이용의 제한)

“을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콘도의 이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
- ②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
- ③ 이 약관에 의거 “을”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④ 화재의 발생, 콘도의 개·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이 불가피한 경우
- 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콘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⑥ “을”의 임직원에게 폭언, 폭행 및 성희롱 등 모욕을 주는 경우
- ⑦ 업장 소란 및 객실의 손상 또는 타 객실의 이용객에게 물적, 정신적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제8조(일반 이용객의 이용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콘도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잔여분의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② “을”은 “갑”의 객실 이용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일반 이용객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관리비 징수)

- ① 콘도를 이용하는 “갑”은 일일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, “을”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“갑”으로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.
- ② “을”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“갑”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객실당 정원)

- ① “을”은 “갑”의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.
- ② “을”은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, 비품, 취사도구 등을 객실 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·관리한다.
- ③ 객실정원 초과시에는 “을”이 정하는 별도의 정원 초과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설물의 멸실/훼손에 대한 책임)

- ① “갑” 또는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② “갑” 또는 “갑”으로부터 회원카드를 대여받아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“갑”이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“갑”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
 - “을”(관리회사)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·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
- ② “갑”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 - 관리비 지급의무
 -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

제13조(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)

- ① “을”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.
 - 관리비 징수
 - 시설관리운영
 - 손·망실 품의 변상액 징수
 - 운영,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
- ② “을”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 -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운영
 - 시설이용 제공
 -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

제14조(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)

- ① “갑”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반 시에는 “을”이 “갑”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일정기간 금지 또는 회원자격 제한(제명)을 시킬 수 있다.
 -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을 개조, 개축,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
 - 콘도 회원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
 -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기구,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콘도 내 반입, 보관 하는 행위
 - 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
 - 근무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 모욕을 주는 경우(법이 정한 불법행위 시)
 -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여길 정도의 객실 손상 및 영업방해
 - 각 조항은 회원 및 회원에게 권리를 대여받은 비회원에게도 적용되며 비회원의 경우 대여한 회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- ② “갑”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외출 시에는 창문,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는 반드시 프런트에 보관할 것
 -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, 방화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숙지할 것
 - 콘도이용 시 시설 별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

제15조(운영위원회 설치)

- ① “을”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“갑”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“갑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“을”에 건의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- 관리비, 정원 초과료 및 명의 변경 수수료의 조정
 - 예약제도의 설정 및 변경
 - 분양(입회)계약서, 시설이용약관, 숙박약관 및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약관의 변경
 - 분양(입회)계약서에 근거하여 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한 비용 징수 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, 시설물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항
 -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용도변경·증설, 개·보수 및 철거, 단, 당초의 마스터플랜에 의거 회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을 연차 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함
 - 다른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과의 연계 사용
- ③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“을”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16조(약관의 개정)

본 약관의 변경은 “을”의 이사회 결의로 한다.

제17조(약관의 시행)

변경된 약관은 시행 전 리조트 홈페이지와 프론트에 공지하며, “갑”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공지 시점으로부터 15일 후 시행 적용한다.

(갑)

주 소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성 명 (법 인 명)	(인)

(을)

주 소	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, 6층(서소문동, 동화빌딩)	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214-81-05054		
성 명 (법 인 명)	(주)승 산		
대 표 자	허 인 영		(인)
계 약 담 당 자	소속	직책	성명 (인)